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a href="http://www.daedeok.go.kr">http://www.daedeok.go.kr</a>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9-49호**  
**2019. 7. 26.(금)**

## 차      례

### 조      례(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72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73호) .....4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74호) .....14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1375호) ....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376호) .....2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조례 제1377호) ..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조례 제1378호) .....3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조례 제1379호) ...3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조례 제1380호) .....4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381호) .....4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조례 제1382호) .....5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조례 제1383호) .....5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384호) .....61

### 규      칙(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73호) .....67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74호) ..70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40호) .....82

**고 시(3)**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장동5호선)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19-92호) .....91
- 도시계획시설(청솔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고시 제2019-93호) ....94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9-94호) .....96

**공 고(3)**

-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공시(공고 제2019-674호) .....97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677호) .....98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변경) 공고(공고 제2019-680호) .....100

**입법예고(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675호) .....1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678호) .....12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679호) .....132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72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93명”을 “72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78명”을 “70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대덕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22					
정 무 직	소계	1					
	구청장	1	1				
일 반 직	소계	719					
	3급	1	1				
	4급	4	3		1		
	5급	42	23	3	3	1	12
	6급 이하	672					
별 정 직	소계	2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국정연계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인력 확충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93명” 에서 “722명” 으로 29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78” 명에서 “707명” 으로 조정함(제2조).
  
-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 (별표 2 및 별표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73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과, 지적과”로 한다.

제6조 중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를”을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도시재생사업  
단을”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의정담당주사가”를 “의정팀장이”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업무소관담당주사와”를 “업무소관팀장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공동체 담당이”를 “공동체팀장이”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문화예술정책담당주사가”를 “문화예술정책팀장이”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문화예술정책담당주사로”를 “문화예술정책팀장으로”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경리담당주사가”를 “경리팀장이”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리담당주사”를 “경리팀장”으로 하고 “감사담당주사”를 “감사팀장”으로 하고 “세입관리업무담당주사로”를 “세입관리업무팀장으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 관서란 중 “담당”을 “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 ①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뒤쪽 작성요령 ①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확인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징수확인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확인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공유재산업무 담당 주사가”를 “공유재산업무팀장이”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담당자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민원지적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기금업무담당주사”를 “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청소담당주사”를 “청소팀장이”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업무담당 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업무담당 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정책담당주사”를 “복지정책팀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주사는”을 “보건행정팀장은”으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㉒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를 “장애인복지팀장이”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여성복지담당주사”를 “여성복지팀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아동청소년 담당주사”를 “청소년아동친화팀장이”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아동청소년담당”을 “청소년아동친화팀장”으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담당”을 “안전행정팀장”으로 한다.

㉛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택담당주사가”를 “공동주택지원팀장이”로 한다.

㉞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동주택담당주사가”를 “공동주택지원팀장이”로 한다.

㉟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공공시설담당주사”를 “공공시설팀장”으로 한다.

③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업무담당 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③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하수담당주사가”를 “하수팀장이”로 한다.

제11조제5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6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③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중 “교통행정담당”을 “교통행정팀장”으로 한다.

③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진료담당주사”를 “보건행정팀장이”로 한다.

④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예방의약담당주사로”를 “감염병관리팀장으로”로 한다.

④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가”를 “국민건강증진업무팀장이”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 분청 실·단·국장의 분장사무 (제7조 관련)

※엑셀파일 별첨(p.12~p.15)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2조 관련)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	수임 기관	비고
총무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동장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같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다. 특별휴가	같은 조례 제23조		
문 화 체 육과	2	송촌 문화의 집 운영·관리	「지방자치법」 제104조	송촌동장	
	3	신탄진 문화의 집 운영·관리	「지방자치법」 제104조	신탄진동장	
에너지 경제과	4	농지원부 작성·비치	「농지법」 제49조	동장	
	5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법」 제50조	동장	
	6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50조	동장	
복 지 정책과	7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동장	
		가. 대상자 접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		
		나. 욕구 조사			
		다. 사례회의 개최			
		라. 대상자 구분·선정			
		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바. 서비스 제공·점검·종결			
		사. 사후관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국정연계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행정기구의 정비를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자치행정국, 안전도시국에 설치하는 과를 정함(제4조 및 제6조).
  - 자치행정국: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과」, 「지적과」로 분리 설치
  -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를 「도시계획과」로 변경하고 「도시재생사업단」을 신설
- 그 밖에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개정 내용을 부칙에서 일괄 정비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74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동행정”을 “동 행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을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반”을 “통·반”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촉한다”를 “동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관할구역의 세대주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며, 관할구역의 세대주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불참하는등”을 “불참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과반수 이상이”를 “과반수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로 한다.

제13조 중 “무료열람 및 사용등”을 “무료열람 및 사용 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월정 수당을지급하고”를 “월정수당을 지급하고”로, “동소속 공무원”을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라 신설된 주민자치회에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원봉사 통장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용어 및 맞춤법을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심의 권한을 조정함(제4조).
  - 기존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지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산 되고 주민자치회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심의를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함.
- 자원봉사 통장 규정을 삭제함(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3항).
  - 통장 위촉 기준의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자원봉사 통장에게는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75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 7시까지),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등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사용내역 공개)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매월 1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건당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하였을 때로 하며 사용일시, 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하여 각 지출건별로 공개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목적성·책임성·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함(제3조).
-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 교육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  
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76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 중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설해·동해·병충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재난지수”라 함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 한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해당되는 농업재해의 발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재난지수 산정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 유공자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구청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당해 농업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 재난지수별 복구비 지원금 기준표

재 난 지 수	복구비지원금(원)	비 고
200이상 ~ 300미만	300,000	재난지수 300미만 복구비 지원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함
100이상 ~ 200미만	200,000	
50이상 ~ 100미만	100,000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 재해복구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에 대해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피해발생 신고 및 피해 현장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재난지수 산정과 복구비 지원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77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 다학제적 접근과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

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5.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6. "다학제적 접근"이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성직자·영양사·관련전문가 등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민간단체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 다학제적 접근과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구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비밀유지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78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

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0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구청장은 악취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방지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공개) 구청장은 악취 위반사업장, 악취농도 등 관련 정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기후환경과장으로 하고, 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지역 주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민관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주민공개에 대해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역할, 회의, 수당에 대해 규정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79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관람석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① 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구가 관리·운영(위탁관리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에 대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최적의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제3조).
- 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함(제4조).
-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배정에 대해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비용의 보조 및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에 대해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80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

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양성 평등한 가정을 실현하고, 고령화·청소년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화목한 가정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목적을 규정함(제1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함(제3조).
-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함(제4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81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대응 및 지역사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18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3. “육아물품”이라 함은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대덕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 장려정책의 확산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물품 등의 구입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행정기관의 관련정보 확인 후 제4조의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 다자녀가정 지원 관리대장에 서명날인 후 온누리상품권 등을 전달한다.

제6조(대장비치 등) 동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서 및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대전광역시 조례 등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다자녀가정 지원 관리대장

행정동	주소	성명	대덕구 전입일	18세미만 자녀수	지원물품	수령일자	수령인	비고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함(제4조).
- 지원신청에 대해 규정함(제5조).
- 대장비치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전자 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82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어린이집 등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소 식재료 경우에는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검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급식소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급식

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급식소를 관리하는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급식소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소에 대해 영유아, 아동, 일반인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업무협조)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집 등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및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 및 조치에 대해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급식소 지원에 대해 규정함(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83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하며,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 5. 학교 밖 청소년 심리상담 지원 사업

제6조(지원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관리
8.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이 지원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대덕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 및 제4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 및 제7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84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해보상) ① 자율방재단원의 재해보상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  
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  
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  
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장제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 장제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제보상금등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장제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제보상금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



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⑥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 요양 [ ], 장애 [ ], 장제 [ ], 유족 [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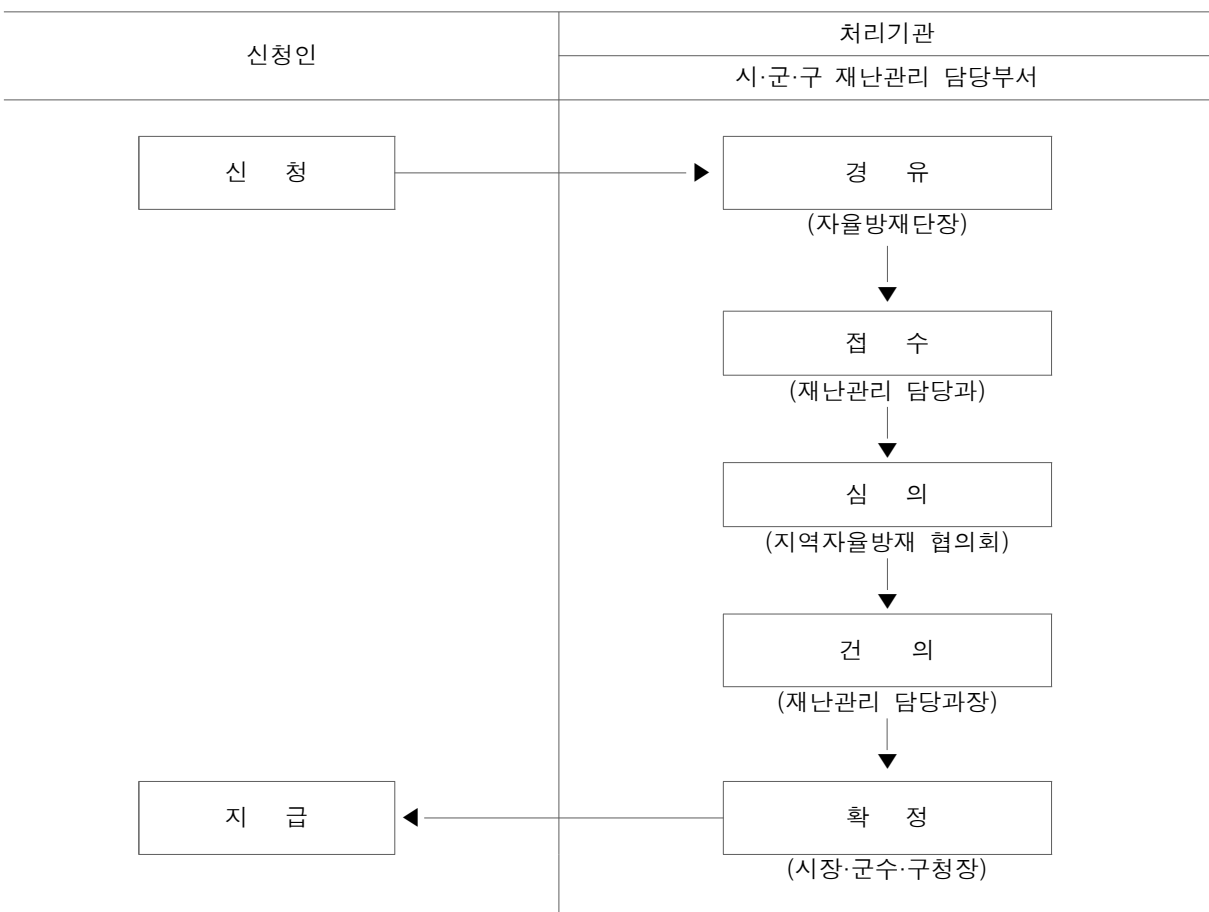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지역자율 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8조).
  -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종류에 따라 청구기간을 산정하고, 지급결정을 위한 심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절차를 규정
  -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 규정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73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관별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6~p.1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국정연계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관별 직급·직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74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  
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중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  
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  
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을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시재생사업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의정담당”을 “의정팀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담당주사”를 각각 “팀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주무담당주사를”을 “주무팀장을”로 하고 “주무담당주사가”를 “주무팀장이”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주무담당주사로”를 “주무팀장으로”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주무담당주사로”를 “주무팀장으로”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세입업무담당주사로”를 “세입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관수자란 중 “민원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주무담당주사”를 각각 “주무팀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무담당주사”를 “주무팀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란 중 “인사담당”을 “인사팀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란 중 “인사담당”을 “인사팀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자란 중 “감사업무담당”을 “감사팀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물품출납원의 “경리담당주사”를 “경리팀장”으로 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의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물품출납원의 “의정업무담당주사”를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물품출납원의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의 “서무담당주사(담당주사가)”를 “서무팀장(팀장이)”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타목 중 “경리담당주사”를 “경리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제마목 중 “의정담당”을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제사목 중 “재무업무담당주사, 재무업무담당주사가”를 “재무업무팀장, 재무업무팀장이”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제아목 중 “세입업무담당”을 “세입업무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제자목 중 “서무업무담당”을 “서무업무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제라목 중 “재무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를 “재무업무팀장 또는 서무업무팀장(담당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제마목 중 “재무업무담당주사, 재무업무담당주사가”를 “재무업무팀장, 재무업무팀장이”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민원지적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주무담당주사”를 “주무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6-1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1면)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뒤쪽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갑)의 앞쪽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시재생과 주무 담당주사”를 “도시계획과 주무 팀장”로 하고 한다.

제15조제5항 중 “기록물담당주사가”를 “기록물팀장이”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민원지적과”를 각각 “민원봉사과”로 한다.

㉒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민원지적과”를 “지적과”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 본청 실·단·과장의 분장사무 (제9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11 ~ p.27)



# 당 직 근 무 일 지

20    년    월    일 (    요일, 일·숙직)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전결	재
당 직 자	· 사령 : 직            성명            ①인	<b>기 관 별 당 직 사 항</b>					
	· 반장 : 직            성명            ①인	기    관    명	당 직 자 (재택근무자)	당 직 신고시간			
특 이 사 항				오    정    동			
				대    화    동			
				회    덕    동			
<b>당직자 보안점검 실시결과</b>				비    래    동			
부 서    별	이상유무	부 서    별	이상유무	송    촌    동			
기획홍보실	유·무	여성가족과	유·무	중    리    동			
감사평가실	유·무	위    생    과	유·무	법    1    동			
새로운대덕추진단	유·무	도시계획과	유·무	법    2    동			
총    무    과	유·무	안전총괄과	유·무	신    탄    진    동			
교육공동체과	유·무	공원녹지과	유·무	석    봉    동			
문화체육과	유·무	건    축    과	유·무	덕    압    동			
회계정보과	유·무	건    설    과	유·무	목    상    동			
세    무    과	유·무	교    통    과	유·무	보    건    소			
민원봉사과	유·무	도시재생사업단	유·무	복합문화센터			
지    적    과	유·무	의회사무과	유·무	신탄진도서관			
에너지경제과	유·무	기            타 (대덕구체육회, 대덕구체육회 사무국, 자원봉사센터, 후별관 등)	유·무	안 산 도 서 관			
기후환경과	유·무			송 촌 도 서 관			
복지정책과	유·무			대덕문화체육관			
사회복지과	유·무			대 청 공 원			
※ 당직자 보안점검 : 화재예방, 시건장치 잠금상태, 문서 보안상태 등							
<b>C C T V    관    찰    사    항</b>							
관    찰    시    간	이상유무	조    치    결    과				점    검    자	
:    ~    :							
:    ~    :							
:    ~    :							
:    ~    :							

## 열 쇠 관 리 대 장

구 분	년 월 일 보 관 자		년 월 일 지 출 자	
	시 간	성 명	시 간	성 명
구 청 장 실				
부 구 청 장 실				
자 치 행 정 국 장 실				
경 제 복 지 국 장 실				
안 전 도 시 국 장 실				
기 획 홍 보 실				
감 사 평 가 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총 무 과				
교 육 공 동 체 과				
문 화 체 육 과				
회 계 정 보 과				
세 무 과				
민 원 봉 사 과				
지 적 과				
에 너 지 경 제 과				
기 후 환 경 과				
복 지 정 책 과				
사 회 복 지 과				
여 성 가 족 과				
위 생 과				
도 시 계 획 과				
안 전 총 괄 과				
공 원 녹 지 과				
건 축 과				
건 설 과				
교 통 과				
도 시 재 생 사 업 단				
의 회 사 무 과				
자 원 봉 사 센 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국정연계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행정기구 및 부서별 분장 사무를 정비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의 직급을 정함(제6조).
- 안전도시국 소속 과단장의 직급을 정함(제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40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사업무담당주사가”를 “의사팀장이”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6급 공무원(담당주사, 주무)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6급 공무원(담당주사, 주무)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지침”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6급 공무원(팀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담당주사, 주무”를 “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담당주사, 주무 - 이하 “담당주사”라 한다)”를 삭제하고, “담당주사는”을 “팀장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 중 “담당주사는”을 “팀장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을 “감사평가실”로 하고, “기획홍보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기획홍보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내부위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란 중 “민원지적과”를 “지적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계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감사담당주사가”를 “감사팀장이”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골프 및 사행성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결재란 중 “감사담당주사”를 “감사팀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기획담당”을 “총무팀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안업무 시행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보안업무담당주사”를 “보안업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호제가목 중 “보안업무담당주사”를 “보안업무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나목 중 “보안업무담당 주사”를 “보안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하고,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사업무 담당주사로”를 “인사팀장으로”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당면주요시책에 대한 책임제실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계획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기유물 및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담당주사로”를 “문화예술정책팀장으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앞면)의 결재란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사전심사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민원사무명란 중 “민원지적과”를 “지적과”로 하고, “도시재생과”를 각각 “도시계획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중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민원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민원담당주사”를 “민원여권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민원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민원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민원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민원여권담당”을 “민원여권팀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대덕구종합민원실공무원복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민원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민원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민원지적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표 1] 구 본청 보좌·보조기관의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p.9 ~ p.11

[별표 3] 직속기관의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p.12

[별표 4] 사업소의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4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p.13

[별표 5] 동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5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p.14 ~ p.15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별표]

**공무원 등의 정수표** (제7조 관련)

(단위 : 명)

직종별 부서별	계	단순노무	기술인부	공사인부	환경관리 요원	행정실무원	청원경찰		
							소계	경비	단속 감시
총 계	194	32	13	28	87	25	9	6	3
본 청	169	24	12	28	87	9	9	6	3
기획홍보실	2	2 구정홍보자료수집 1 구정전략홍보사무 1							
총 무 과	15	9 취사인부 4 민원처리 보조 1 비서실 및 부속실운영지원 2 복무관리 시스템 운영 1 4대보험 및 상시학습업무지원 1	1 영양사	2 청사실외청소			3	3	
문화체육과	3	2 체육관관리					1	1	
회계정보과	1	1 전화안내원							
세 무 과	1		1 채납징수						
민원봉사과	3	3 기록물관리 2 가족관계등록관리 1							
지 적 과	1	1 도로명주소관리							
기후환경과	90		2 불법투기단속	1 재활용인부	87 환경관리요원				
복지정책과	4					4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과	3	1 장애인편의시설관리				2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여성가족과	3					3 드림스타트			
도시계획과	3						3		3
안전총괄과	1	1 민방위시설관리							
공원녹지과	13	1 민원안내 및 전시시설 관리		10 공원녹지관리			2	2	
건축과	3		3 광고물정비 2 위반건축물정비 1						
건설과	21	1 지하수검침	5 노점상단속	15 도로보수 8 하수도보수 7					
교통과	2	2 주차장시설유지관리							
의회사무과	2	1 의원사무실 의전 및 사무보조	1 음향기기관리						
보건소	16					16 예방접종등록센터 1 통합건강증진사업 15			
복합문화센터	4	4 도서정리							
동	3								
송촌동	2	2 송촌문화의집관리							
신탄진동	1	1 신탄문화의집관리							

「대전광역시대덕구통계사무처리규정」 [별표]

부 서 별	통 계 통 제 관	통 계 심 사 관
본 청	기 획 홍 보 실 장	통 계 업 무 팀 장
사 업 소 기타 청·소	주무과장(사업소에서는 과장이, 과장이 없을 경우 주무팀장 또는 팀장)	주무팀장(팀장이 통계통제관인 경우 서무담당자)
동	동 장	서 무 담 당 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국정연계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기관(부서)별 직급·직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 본청 : 452명 → 470명 / 18명 증가
- 의회사무과 : 15명(변동없음)
- 보건소 : 46명 → 50명 / 4명 증가 (간호 4명)
- 복합문화센터 : 31명(변동없음)
- 동 : 149명 → 156명 / 7명 증가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장동5호선)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3-장동5호선) 「소로3-장동5호선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8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장동5호선)
- 2) 사업의 명칭 : 소로3-장동5호선 도로개설사업

다. 사업의 규모

구분	도로명	사업내용	위치		비고
			시점	종점	
도로	소로3-장동5호선	도로개설 L=150m, B=6.0m	장동 84번지	장동 90번지	일부개설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9. 고시일 ~ 2019.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본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거나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공사완료 후 해당 시설관리청에 무상귀속

아. 관계도서 : 게재생략(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 건설과 (☎042-608-5212)에 비치)

### ◎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 소유자			권리 이외의 소유자			비 고	
	동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장동	796-14	구	5	1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0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2	장동	795-5	도	239	1	국토교통부						당초	
					0	국토교통부						변경	
3	장동	796-13	구	88	15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0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4	장동	796-15	구	3,093	291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159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5	장동	795-9	도	391	15	국토교통부						당초	
					88	국토교통부						변경	
6	장동	85-1	답	248	248	송규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82					당초	
					248	송규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82					변경	
7	장동	85-2	도	66	34	대전광역시						당초	
					66	대전광역시						변경	
8	장동	84	답	605	289	송범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77					당초	
					345	송범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77					변경	
9	장동	77	대	1,471	2	이상복	신탄진읍 평촌리 138-13					당초	
					0	이상복						변경	
10	장동	797	도	165	35	국토교통부						당초	
					31	국토교통부						변경	
11	장동	90	전	929	316	송범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77					당초	
					247	송범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77					변경	
12	장동	92-1	전	916	210	송범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77					당초	
					47	송범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77					변경	
13	장동	91	대	238	65	송범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77					당초	
					24	송범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77					변경	
총 계				8,454	1,522							당초	
					1,255								변경

※ 상기 토지상 지장물건 일체 포함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장동5	6	국지도로	297	장동171-3	장동90	일반도로		2006-07-20	
변경	소로	3	장동5	6	국지도로	297	장동171-3	장동90	일반도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 도시계획시설(청솔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490-1번지(청솔어린이공원) 내,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청솔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덕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년 7월 2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490-1번지 / 청솔어린이공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 사업의 명칭 : 청솔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다. 사업의 규모

- 공원총면적 : 5,640.7m<sup>2</sup>
- 사업 면적 : 공원 내 화장실 설치 1동(18m<sup>2</sup>)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 2019.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부조서

구,시	동,면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 계				5,640.7	5,640.7					
대덕	충리동	490-1	공원	5,640.7	5,640.7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			

사. 실시계획 조서

구분	공원조성계획 결정 (㎡)					(금회) 실시계획 작성 (㎡)				비고
	부지면적	%	건축면적		부지면적	%	건축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총계	5,640.7	100.0	-	-	18	0.32	18	18		
계	1,824.69	32.34	-	-	-	-	-	-		
시설지역	기 반 시 설	소계	1,434.6	25.43	-	-	-	-	-	
		광장	862.17	15.28	-	-	-	-	-	
		소로	572.43	10.15	-	-	-	-	-	
	휴양시설	-	-	-	-	-	-	-	-	
	유희시설	351.93	6.24	-	-	-	-	-	-	
	조경시설	20.16	0.36	-	-	-	-	-	-	
	편익시설	18	0.32	18	18	18	0.32	18	18	
녹지	3,816.01	67.65	-	-	-	-	-	-		

아. 관계도서 : 게재생략(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끝.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오정동 438-8	한남로114번길 44	2019. 7. 26	건물신축	한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1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정동 488-3	대전로 1031	2019. 7. 26	건물신축	대전시의 주요 도로임을 반영	
갈전동 540	대청호수로 1536-46	2019. 7. 26	건물신축	대청호수의 명칭을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개별지 중 이의신청에 따라 가격이 조정된 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공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대상필지: 14필지(대덕구 송촌동 156-3외 13필지)
- 공시장소: 대덕구 공보, 구 홈페이지, 구 게시판
- 공시내용: 2019. 5. 31. 자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개별지 중 이의신청에 따라 가격이 조정된 필지의 m<sup>2</sup>당 가격

연번	토지소재	결정지가(원)	조정지가(원)	조정결과
1	송촌동 156-3	193,000	204,500	상향
2	와동 225-1	78,900	84,000	상향
3	신대동 464-1	337,300	313,500	하향
4	신대동 464-5	337,300	313,500	하향
5	대화동 16-158	495,000	522,500	상향
6	대화동 36-31	711,400	741,100	상향
7	와동 105	129,500	210,000	상향
8	와동 107-10	161,000	210,000	상향
9	와동 107-15	39,900	210,000	상향
10	대화동 16-227	544,600	585,200	상향
11	대화동 601-4	545,200	574,200	상향
12	대화동 40-25	470,400	456,100	하향
13	대화동 35-79	372,400	349,900	하향
14	읍내동 230-8	469,700	483,900	상향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LG유플러스로부터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신일동로17번길 (신일동)	통신관 매설	신일동 1684-39일원	100	아스팔트	32	'19.7. ~'19. 8. ( 착공일로부터 10일)	38.4 ( 착공일로부터 10일)	3.84 ( 허가일로부터 10년)

2019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사 진 대 지(제2019-41호)

골착위치

신일동 1684-39번지 일원

## 위 치 도



## 현 장 사 진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변경)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231-6번지 상 건축물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6-818호” 로 지정 공고한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아 래

### 1. 공고하는 사항

구분	위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적(㎡)	너비(m)	길이(m)	
기존	건축법상 용호동	13	1.02	12.7	권혁필
변경	도로지정 231-6	15	0.92	16.35	정 훈

###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개정이유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 관련 학과에 대해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

나. 장학생 선발시험 홍보를 강화하고, 장학생 선발 공고사항에 학과를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학교' 문구를 삭제함(안 제4조).

다. 장학생 선발방법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으로 실시하고, 필기시험은 3과목 이상, 과목별 과락기준을 적용함(안 제7조 및 제7조의3).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기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 8.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총무과(전화 : 042-608-6522, FAX : 042-608-3821,

E-mail : gag46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 담당자 심상욱(전화 : 042-608-65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장학금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지급대상 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를 “대덕구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 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선발대상 학교,”를 “선발대상”으로 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년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기

학업성적이 같은 학과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입학성적이 같은 학과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되고자 하는”을 “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구비 여부에 대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 시험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제8조 중 “서식에 의하여”를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8조제1항에 따라”로, “제6호서식에 의한다”를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사람에게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를 “사람”으로, “장학생별”을 “장학생이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 장학생별”로,

“관리하되”를 “관리하고”로,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지방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

① 성 명	(한자 )	② 생년월일	⑤ 사 진
③ 현주소			
④ 재 적 학 교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		

친권자 ( 또는 법정대리인 )

⑥성 명	⑦ 생년월일	⑧ 직 업	⑨ 주 소	⑩ 관계

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u>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추천서</u>		
성 명 (한자)	(                    )	생년월일
현주소		
재적학교	( 전공과목 :                    학 (교)                    학과                    학년 )	
<p>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 ( 신입생 ) 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p> <p><b>붙임</b> : 성적증명서 1통</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 학 (교) 장    ○ ○ ○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직인</span></p> <p style="margin-top: 20px;">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p>		

\* 성적증명서는 해당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기 관 명

분류번호 ( 전화 : ) . .

수 신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학생이 ( )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현 주 소			
재적학교	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	증 서 번 호 :	기타사항	
	증서수여일자 :		

붙임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 부.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직 인

증서번호    제       호

장 학 증 서

○○ 학(교) ○○학과 제○학년  
성    명

위 학생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 장학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신청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장 학 생		신 청 액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 년	성 명	계	입학금	등록금	기 타	

년 월 일

○ ○ 학 교 장 직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성명 (한자)	(        )	생년월일	
------------	------------	------	--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주소	세대주	주소	세대주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 기타특기사항

3. 재정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4. 관리기록

지원 선발	학 교 명	학 년		전 공 학 과			
	지원일자	선발일자		선발 당시 학교성적	평균	점(석차 / )	
장학금 지 급	지 급 일	지 급 액	누 계		지 급 일	지 급 액	누 계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년 월 일	적 요	년 월 일	적 요

6. 임용상황

임 용				임 용 대 기	임 용 포 기
일 자	계 급	직 렬	기 관(계단위까지)	(사유)	(사유)

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지급총액		
년 월 일	반 납 액	잔 액	년 월 일	반 납 액	잔 액

8. 기타 특기사항

※ 연락 전화번호 자택 (            )    학교 (            )

[별지 제8호서식]

○ ○ 학 교  
( 전화 : )

분류기호 . . . . .

수 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재 학생 본인		지 일 급 시	지 급 액				수령인	비 고
학 년	성 명		계	입학금	등록금	본인지급		

○ ○ 학 교 장 직인

[별지 제9호서식]

○ ○ 학 교

( 전화 : )

분류기호 . . . . .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 ( 분기말) 성적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성 명	학 과	학 년	비 고

2. ( )년 ( )학기 ( 분기 ) 말 성적

성 적 사 항				출 석 사 항	
과 목	성 적	과 목	성 적	구 분	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기타 특기사항 (상별사항 등)	
평 균		석 차	/		

○ ○ 학 교 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 ○ 학 교

(전화 : )

분류기호 . . .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학 과	학 년	비 고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 학 교 장 직인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 ----- -----.</p>
<p>제2조 (장학금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지급대상 학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p>	<p>제2조 (장학금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지급대상 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p>
<p>제4조 (장학생 선발공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u> 공고하여야 한다.</p>	<p>제4조 (장학생 선발공고) ----- ----- ----- ----- <u>대덕구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u> 공고하여야 한다.</p>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 8. (생략)

제5조 (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2. (생략)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 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 (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신원증명서 1통

4. (생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각 1

1. 선발대상 -----  
-----

2. ~ 8. (현행과 같음)

제5조 (지원자격) -----  
-----  
-----.

1.·2. (현행과 같음)

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년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기 학업성적이 같은 학과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입학성적이 같은 학과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제6조 (지원) ----- 되려는 ---  
-----  
-----  
-----.

1.·2.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삭제>

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제7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신 설>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삭 제>

<삭 제>

제7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구비 여부에 대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7조의3(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 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  
-----  
-----

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장학생 관리)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

-- 따라 -----  
-----  
-----  
-----.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  
-----  
-----  
-----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영 제9조제2항  
에 따라 -----  
-----  
-----  
-----.

제12조 (장학생 관리) -----  
-----  
----- 사람 -----  
-----  
-----  
-----  
-----  
----- 장학생이 의무복무를

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 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완료할 때까지 장학생별로 - 관리하고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

## 관 련 법 령

###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

**제5조(장학생의 선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품행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10일내에 그 결과를 해당 학교장 및 본인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10일내에 그 결과를 해당 학교장 및 본인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5. 21.>

[시행일 : 2021. 1. 1.] 제5조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67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인건비, 유류비 등 수거원가가 상승됨에 따라 2012년 1월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나. 분노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함(안 별표).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후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후환경과(전화 : 042-608-6851, FAX : 042-608-3834, E-Mail : alrud44@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후환경과 담당자 이미경(전화 : 042-608-68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라”를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를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거요금	
분뇨	18ℓ당		계	320
			수거비	302
			처리비	18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0.75m <sup>3</sup> 까지	계	15,860
			수거비	15,110
			처리비	750
	초과	0.75m <sup>3</sup> 초과 0.1m <sup>3</sup> 마다	계	1,846
			수거비	1,746
			처리비	1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u>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u></p> <p>1. <u>분뇨의 수집·운반량</u></p> <p>2. <u>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거기의 양</u></p> <p>② <u>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u></p>	<p>제5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 <u>따라</u>  <u>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u>            -----            -- <u>부과·징수</u> -----            ---. -----            -----            -----            -----.</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② <u>제1항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u></p>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인상에 따라 관련 별지서  
식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나. 분노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과 상위법령에 따라 별지서식을 정비함(안 별지서식).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후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후환경과(전화 : 042-608-6851, FAX : 042-608-3834, E-Mail : alrud44@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후환경과 담당자 이미경(전화 : 042-608-68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청소기간”을 “청소이행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수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 촉구기간 및 과태료 처분 내용을 기재하여”를 “촉구기간 등이 기재된”으로,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를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안내) ① <u>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안내하는 경우 <u>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u> 청소기간,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달의 청소대상자에게 매월 말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에 의하여</u> 통지한 기간 내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수도법」 제80조의 <u>규정에 의한</u> 청소 촉구기간 및 <u>과태료 처분 내용을</u> 기재하여 청소 촉구 <u>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u>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③ <u>제2항의</u> 과태료 처분의 경우 분뇨 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청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하여 청소기간 내에 청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귀책</p>	<p>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안내) ① <u>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u> ----- <u>청소 이행기간</u>-----</p> <p>-----.</p> <p>② <u>제1항에 따라</u> ----- <u>촉구기간</u> ----- <u>등이</u> 기재된 ----- <u>통지서</u>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③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른 -----</p>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영수증 교부) 조례 제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  
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징수하였  
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  
한 영수증을 3매 발행하여 청소  
시행자에게 1매를 교부하고, 구  
청장 및 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

제5조(영수증 교부) 조례 제5조제  
1항에 따라 -----

-----  
----- 별지 제1호서식 ---  
-----  
-----  
-----  
-----.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